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

부산디지털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업체명 (이하 '회사'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의 산
업체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업체명_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부산디지
털대학교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 데 있다.

제2조 (위탁교육의 과정)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원격대학 과정
으로 한다.

제3조 (위탁생의 자격)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업체명 에서 근무 중인 자로 한다.

제4조 (위탁생의 선발과 입학) ① 위탁교육 대상자는 재직 중인 병원에서
일괄 추천한다.

② 대학은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
다.

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병원 또는 대
학의 장이 정한다.

제5조 (병원의 시설사용)

※ 병원의 시설 사용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시설의 목록, 사용방법
등을 작성하고 이 약정의 별표로 첨부함.

제6조 (병원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동) 위탁 병원의 임직원 중 교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
로 위촉(임명)할 수 있다.

제7조 (교육비 및 등록) ①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대학의 학생 납입금 수준으로 하되, 병원과 협의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기타 위탁생의 교육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생의 신분) 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부산디지털 대학교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제9조 (대학에 대한 병원의 지원)

※ 대학에 대한 특별한 지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약정서의 본문 또는 별표에 명시토록 함.

제10조 (위탁교육협력위원회)

※ 대학과 병원은 약정에 의거 위탁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이 경우 동 위원회의 기능 등 소관사항 명시)

2025 . 6 . 25 .

부 산 디 지 털 대 학 교
총 장 최 원 일

업 체 명
대 표 * * *
